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54	제안년월일 : 2001년 9월 13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	-------------------------------------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건설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33인 이하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교환과 자료수집 활동을 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1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	-----	-----------------------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가. 제안이유

○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나. 주요골자

- 제명개정
 - "비용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을 정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가. 비용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

-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충당해 주는 것은 실비보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나. 일비는 출석수당 등으로 개정

- 예산용어상 일반회 회의참석 또는 출장에 따른 소요되는 1일 경비를 말하므로 위원이 출석하여 안전을 검토하는 건에 비추어 출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2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	-----	-----------------------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가. 제안이유

- 현재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시세의 부과정수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있으나 체납시세징수제고를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징수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시세는 시장이 직접

<p>정수하며, 구세에 부과 또는 병기하여 고지된 시세와 현재 소송계류 중이거나 회사 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기존방식대로 구청장이 정수코자 함.</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태호)</p> <p>가. 시세체납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6월말 시세체납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주민세 체납액이 48.2%로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전체의 6%이고, 체납 규모는 '95년 기준으로 2배 증가하였음. 주요증가 사유는 가산금 부과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으로 해서 체납액의 24%가 가산금으로 부과된 것임. <p>나. 체납발생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자치제 이후 자치구청장의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의지 부족과 채권확보를 위한 전문적 지식부족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징수활동 부진과 징수불능 체납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 회피가 주요원인임. <p>다.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체납 규모가 1조 2,0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고액체납시세 특별징수반"을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927</td> <td style="width: 70%;">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p> <p>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p>	의안 번호	927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9월 5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p> <p>가.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시행령이 현행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제20조의2제2항제1호로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 기금의 용도 중 현행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에서 인명구조, 부상자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로 변경하고자 함.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없음.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923</td> <td style="width: 70%;">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p> <p>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p> <p>가.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를 촉진시키고 주택수요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60㎡ 초과 85㎡ 	의안 번호	923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927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923	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